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26. 9. 30.>

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3일

신청업체 [] 수출업체 [] 제조업체	대표자	생년월일(외국인 등록번호)
	업체명	전화번호(팩스번호)
	소재지	
	담당자	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
구분 [] 식품등 [] 건강기능식품 [] 축산물	[] Health Certificate(위생증명서) [] Certificate of Free Sale(자유판매증명서) [] Certificate of Analysis(분석증명서) [] Certificate of Manufacture(제조증명서) []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(GMP) Compliance of a Manufacturer (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) [] Certificate of Traceability(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명서) []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s (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) [] Other Required Certificate(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증명서)

Name of product(제품명)	Total Cost(금액$)
Type of product(유형)	Weight(중량)
Type & No. of Packages(포장수량 및 형태)	
Date of manufacture or Lot No.(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)	
Manufacturing process (제조방법)	
Ingredients(원료명)	
Establishment No.(영업허가·신고·등록번호)	
Test results(검사항목)	
Name &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(제조회사명 및 주소)	
Country of destination(도착국)	
Name & address of consignor(수출업체명 및 주소)	
Name & address of consignee(수입업체명 및 주소)	
Remarks(비고)	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4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

1. 영업허가·신고 또는 등록증
2. 품목제조보고서(기구·용기·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,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의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)
3.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
4. 수출식품등 영문검사성적서 원본(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). 다만,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서류검사	➔	결재	➔	증명서 발급
신청인		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					